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⑥

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⑥

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y of Global Legislation for Enactment of Immigration Law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
Kang, Hyun Cheol

2015.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외국인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른 사회적 제문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법제와 정책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

□ 목 적

○ 현행 이민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

○ 입법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특히 이민법으로서의 통합입법방안과 독립청으로서의 이민청 설립방안 및 영주권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법제도 중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등록제도 및 영주권제도에 관한 분석

□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200명

○ 조사내용

-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 이민법(가칭) 제정과 그 시기 / 방향

- 이민법(가칭)을 관할할 기구 등

○ 조사방법 :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이민법제로의 개선방안

○ 이민법으로의 법제변화에 관한 검토

○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 영주권 제도의 입법화 방안

Ⅲ. 결 론

□ 현실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를 반영

○ 통합된 이민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외국인 수요 등 정책적 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가 필요

○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단일한 조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체류정책으로서의 영주권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영주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주제어 : 이민법, 국적법,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이민청, 영주권제도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According to the increased inflow of foreign national, we need to require legal perspective

○ It provided the legal system, bu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being made

○ On the need to review for such separation phenomenon in the area of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emerging

□ Purpose

○ Analyze issues relating to the current immigration legislation

○ Polls for the legislative experts

○ Improvement of legislation ever proposed, especially Integrated Method of immigration, Immigrant organizations, Green Card System Improvement

Ⅱ. Major Contents

□ The current immigration legislation Analysis

○ The concept of im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y

○ Details about the acquisition of citizenship, Foreigners registration system, Green Card system

□ Polls for the legislative experts about Immigration

○ Surveyed : 200 people, Congressional officials including Parliamentarians

○ Survey information

- Assessment and the reasons for the current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policies
- Immigration Law enact, the timing and direction
- competent ministries of Immigration

○ Improvements to Immigration

- Review in the immigration laws
- The establishment of immigrant organizations
- Legal plan of permanent residence

Ⅲ. Conclusion

□ A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immigration

○ enact an integrated immigration for response to changes

○ Enforcement of foreign policy through a single organization

○ Change of residency system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immigration law

Key Words : Immigration, Nationality Act, Foreigners Policy, Multicultural Policies, immigrant organizations, Permanent residence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1. 연구의 범위 ····· 18

2. 연구의 방법 ····· 19

제 2 장 현행 이민 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21

제 1 절 이민과 이민정책 ····· 21

1. 이민의 개념 ····· 21

2. 이민정책 ····· 22

3. 이민정책의 현황과 특징 ····· 25

제 2 절 이민법제도 ····· 27

1. 국적취득(귀화제도) ····· 27

2. 외국인등록제도 ····· 32

3. 영주권제도 ····· 35

제 3 장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 41

제 1 절 조사개요 ····· 41

1. 조사배경 및 목적 ····· 41

2. 조사방법 ····· 41

3. 조사내용 ····· 42
4. 응답자 특성 ····· 42

제 2 절 조사결과 분석 ····· 44
제 3 절 문항 간 교차 및 상관 분석 ····· 79

제 4 장 이민법제로의 주요 개선방안 검토 ····· 85
제 1 절 논의의 출발점 ····· 85
제 2 절 이민법제의 개편방향 ····· 86
1. 외국인처우법을 이민법으로 변경하는 방안 ····· 86
2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 89
3. 영주권 제도의 입법화 필요 ····· 91

참 고 문 헌 ····· 95

<부 록>

부 록 1 : 이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문가 설문지 ····· 99
부 록 2 영주권에 관한 법률(안) ····· 103

표 목 차

<표 1> 이민법제의 현황 ····· 23
<표 2> 조사방법 ····· 41
<표 3> 조사내용 ····· 42
<표 4> 응답자 특성 ····· 42
<표 5>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45
<표 6> 소속과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독립성 검증 ····· 46
<표 7> 긍정적 견해의 이유 ····· 47
<표 8> 부정적 견해의 이유 ····· 49
<표 9>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 51
<표 10> 소속과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독립성 검증 ····· 52
<표 11> 이민법 제정의 시기의 시급성 ····· 55
<표 12>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 ····· 58
<표 13> 소속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에 대한 독립성 검증 ····· 59
<표 14> 특정부처 중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 62
<표 15>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독립성 검증 ····· 65
<표 16>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한 의견 ····· 68
<표 17> 소속과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독립성 검증 ····· 69
<표 18> 영주권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 71

<표 19>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74
<표 20> 소속과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독립성 검증 ····· 75
<표 21>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교차표 ····· 79
<표 22>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의 교차표 ····· 80
<표 23>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교차표 ····· 81
<표 24>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 3-1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곳이 나은지에 대한 교차표 ····· 82
<표 25>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과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의 교차표 ····· 83
<표 26>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 *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상관계수 ····· 84

그림 목차

<그림 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44
<그림 2>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 50
<그림 3> 이민법 제정의 시기의 시급성 ····· 54
<그림 4>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 ····· 57
<그림 5> 특정부처 중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 61
<그림 6>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 64
<그림 7> 현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한 의견 ····· 67
<그림 8> 영주권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 70
<그림 9>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7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경제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증대함에 따라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 중의 하나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의 현상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인 이민적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유입 현상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음이 사실이다[1].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유입에 관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은 여전히 외국인 정책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 나아가 차별적 적용의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한계에 더하여 정책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즉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양산으로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의 분리현상이며, 이러한 정책의 분리와 고착화는 부처의 정책적 방향의 차이를 유발하고 국가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개방화와 글로벌화는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구성원에 관한 평등한 권리정책의 구현은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2].

---

1) 다문화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는 임동진, 다문화정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를 참고할 수 있다.

2)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등에 관한 연구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용역보고서인 유길상 외 3인,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폐쇄적인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이 아닌 국내거주자로서의 법제도적 지위를 부여하여 공존·공생하는 사회의 동일 구성원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의 출발점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정책이라는 차별적 성격을 담보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민이라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단일성을 인정하는 용어의 전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전히 이민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왜곡현상을 극복하고 이민을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민을 오는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에 적절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민법 제정에 관한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자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민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법조문의 제시가 아니라 그 필요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도적 대안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기적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방안과 중장기적 입법대안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민법 제정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 이민정책과 법제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하여 이민정책과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의 법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민법 제정의 방향은 특정부처나 개인의 주장이나 노력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기관인 국회구성원의 동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회구

성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 설문조사는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정책을 위한 일반국민이나 관련 대상자에 관한 인식조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입법권자인 국회의원과 관련 구성원의 직접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민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영주권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법제분석과 통계적 분석 및 설문조사 등 종합적인 기초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법 제정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입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시급한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입법대안을 분석하고 대안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종합입법대안으로서 이민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이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과 이민법제의 중장기적 미래입법전략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정책과 이민법제에 관한 논의를 문헌을 통하여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법제와 정책은 기존에 연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주고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재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법률안에 관한 현실적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민법제 관련 국회구성원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 더 월드 브릿지를 통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0일(3주간)의 조사로 이루어

졌다. 조사방법은 일대일 대인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입법전문가인 국회관계자 200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입법전문가의 구분은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 입법공무원, 입법 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구성원, 정당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현재의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이민법(가칭) 제정과 그 시기 / 방향, 이민법(가칭)을 관할 부처와 기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방향(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 2 장 현행 이민 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제 1 절 이민과 이민정책

1. 이민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 있어서 이민 또는 이민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주로 이주민・외국인・외국인거주자・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3] 하지만, 법적 자격으로서의 '이민' 개념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다른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그 국가로 이주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즉, 자격으로서의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 방문, 통근 등의 경우와 같이 정주의사 없는 이주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민을 현상학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로서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이동 가운데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4].

이민은 주로 이민의 목적과 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국제연합의 기준[5]에 따르면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3개월을

3) 네이버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458700); 또 다른 의미에서 '이민'이란 인구학에서 출생, 사망과 더불어 인구규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이동(migration) 가운데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 즉 국제인구이동(internatoinal migration)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사",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20면)

4)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55면.

5)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United Nations(New York), 1998.; 대체적으로 국내문헌에 있어서 이민의 개념적 정의는 이 보고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사", 20면; 유길상 외 3인,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고령

초과하여 체류지를 옮기는 것”을 이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 동안 체류할 의사를 가진 자를 ‘단기이민자’, 1년을 초과하여 정착 또는 영주할 의사를 가진 자를 ‘장기이민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과 법제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이민자 정책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민의 목적에 따라 노동, 정주, 국적취득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이민정책 역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적 관점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주의가 큰 틀에서 상호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민정책

이민정책이란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민을 관리하여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이다[6]. 이민정책의 법제화 방안은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등은 별도의 이민법제(이민법, 이민·통합법, 국적법)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등 외국인 이민경험이 적은 나라에서는 출입국관리법제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7].

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23면;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2015. 31면)

6)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 이론적 배경, 법제의 주요내용, 외국인 인력정책, 다문화 정책, 사회통합정책 등에 관한 연구성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IMO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민정책 연구총서 제1권인 정기선 편, 이선미 외 10인,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와 국적취득 등에 관한 법제에 관하여는 박귀천·이유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참조.

<표 1> 이민법제의 현황[8)]

이민법제의 현황		
출입국	외국인 체류	국적취득
- 출입국 관리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여권법 - 난민법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재외동포재단법 - 사회보장 관련 법률	- 국적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민법제 고려사항
기간 : 단기이민과 장기이민
목적 : 노동, 정주, 투자, 결혼 등
이민단계 : 출입국, 체류, 영주, 국적취득
이민정책 : 다문화 주의와 사회통합주의

현행 법령에 있어서 이민자의 개념은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같은 법 제2조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민자로 대우하는 것으로 매우 협소하게 결혼'이민'자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등"이란 정의규정에서 위의 결혼이민자에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여전

8) 현행 법제의 내용을 이민법과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직접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히 “등”이라는 표현으로 이민자와 국적취득자를 별도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민자란 국적취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주의 계속성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입법정책적 접근이 유효한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관점에 있어서 국적의 취득여부에 따라 정책적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문화정책의 관점에서는 이미 정책대상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분리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민정책은 그 단계별로 출입국정책, 외국인력활용정책, 사회통합정책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9]. 이민정책의 단계별 구분은 각 국가의 이민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즉, 이민의 단계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 출입국정책에 머물고 있을 것인지, 입국한 외국인의 노동정책에 촛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영주하는 외국인과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후발이민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입법적 노력은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입법정책적 내용을 여전히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영주제도와 같은 출입국제도 역시 이민정책의 단계별 정책진행의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9)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사”, 21면; 프리만(Freeman)은 이민유입국의 유형을 이민으로 국가가 형성된 ‘전통이민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청노동자 이민을 받아들인 ‘초청노동자 유입국’(선발이민국-독일 등 서유럽국가), 8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받아들인 ‘후발이민국’(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 일본, 한국 등)으로 분류하였다.(Gary P. Freeman,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4), 1995. pp. 881-902)

이러한 이민정책의 혼란이 이민법제와 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재정비를 통하여 이민정책과 법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외국인이나 귀화자에 대한 시혜적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는 물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법제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3. 이민정책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주로 외국인력정책과 연계하여 발전하였지만,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정책적 방향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의 이민정책과는 다른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외국인력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법체류와 취업의 문제가 만연되어 나타나고 있다[10]. 이것은 외국인력의 단기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외국인력이 유입됨으로써 이에 관한 관리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단기 외국인력활용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직 외국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단순인력활용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영주와 귀화 등의 제도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 외국인 현황 등 이민관련 통계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간한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이민정책의 방향성이 외국인력의 유입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따른 인력수요를 담당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의 정주인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적 방향성은 여전히 순환정책을 기본적 인식으로 하고 있어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외국인력의 활용이 국내적 필요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역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자격자의 구별이나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없이 우선적인 제도 도입만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과 더불어 국내의 외국인 인력활용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 역시 이민정책의 정착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력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공동작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한계로 외국인력의 활용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물론 외국인력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와 더불어 정책의 정확한 집행과 추진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이나 다문화정책이 주요정책과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정확한 통계, 법률적 지위, 임금과 근로조건, 주거와 가족동반의 정도, 취학문제 등 외국인력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인프라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외국인정책에 한정된 분야는 아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외국인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법체류에 관한 통계는 그 정확도를 의심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체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체류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출입국 관련 통계 역시 상호 모순된 자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정책과 다문화정책 등에 관하여 일원화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정책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 등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이민법제도

1. 국적취득(귀화제도)

(1) 서

국적은 국민이 되는 요건 또는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며, 우리 헌법은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국적은 국민의 자격으로 판시하고 있다[11].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으로서 출생과 출생외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선천적 국적취득)은 출생을 원인관계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의 방법은 속지주의(출생지주의)와 속인주의(혈통주의)로 나뉜다. 우리의 국적법은 원칙적 속인주의를 바탕으로 예외적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에 관한 입법론적 관점을 볼 때, 보다 완화된 속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속지주의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생외 국적취득(후천적 국적취득)은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

1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이민법제에 있어서 중요한 국적취득의 방법은 귀화이다. 귀화는 외국인이 출생 이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귀화제도는 1948년 법제정 당시부터 인정된 제도이다. 일반귀화는 국민과의 혈연 또는 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상태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는 외국인이 보다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그 대상자는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④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이다. 특별귀화는 외국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그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의 장단, 성년에의 도달여부, 생계유지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매우 간소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국적법 제7조).

(2) 일반귀화

일반귀화란 대한민국 국민과의 혈연 또는 지연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국내 거주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국적법 제5조). 즉, 일반귀화는 외국인일 것과 합법적인 5년 이상의 국내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도 일반귀화를 신청할 자격을 주고 있지 않다[12].

12) 이 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이 외에 민법에 따른 성년일 것과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천서 및 추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국적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 국내체류요건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적법하게 계속적으로 주소[13]를 두고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전단). 이러한 국내체류요건을 일반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체류를 위한 예비적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류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하며, 불법체류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 그 외국인 등록사항으로 국내체류지를 두어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외국인의 주소를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다[14]. 이것은 주소의 명확성을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형식주의와 단일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15].

13) 주소는 국내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외주소를 둔 상태에서는 귀화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재외공관을 통한 귀화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거소 또는 거주의 개념은 '주소'를 두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국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둘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4) 차용호, 전게서 767면.
15) 차용호, 전게서, 767면.

이와 관련하여,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요건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영주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자, 소송을 수행하는 자 등 임시적·잠정적 성격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귀화를 위한 국내 체류요건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16]. 대법원은 간이귀화에 관한 판결에서 체류자격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7].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임시적·잠정적 성격의 체류자격으로는 일반귀화하기 위한 국내체류기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18]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이 보다 적절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체류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출구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이며, 재입국하는 경우 다시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 ①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19](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②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제2호), ③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체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2) 품행의 단정

이 요건에 관하여는 법령상의 요건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즉, 주관적인 판단기준이면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법률요

16) 이 문제에 관한 국내의 논의현황에 관하여는 차용호, 전게서, 767-768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1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18) 차용호, 전게서, 768면.
19) 기간의 계속성은 인정되나, 출국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건으로 하는 것은 입법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이 제시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20]. '품행의 단정'이라는 요건은 귀화심사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은 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서 '범죄경력과 전과', '법질서위반행위'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요건 역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귀화정책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3) 생계유지능력

이 요건은 97년 이전까지는 귀화신청인의 생계유지능력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의 귀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이다. 귀화허가신청서에는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귀화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이러한 생계유지능력을 귀화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요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 되는 요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며, 귀화자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 최윤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저스티스(한국법학원) 통권 제134-2호, 2013. 292면.

4)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귀화허가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으며(「국적법 시행령」 제4조), 이 시험 중 필기시험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기본소양으로 정의하고 이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이러한 법령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필기시험의 수준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국적업무처리지침[21]」 제6조). 필기시험의 면제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기본소양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

2. 외국인등록제도

(1) 의 의

외국인등록제도란 국내에 일정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등록제도이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하)[22]. 90일 등록기준은 이민기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체류의 장단기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해석되며, 실질적인 이민의 기간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등록 제도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체류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참정권 부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23]. 이는 외국인등록 의무의 시간적 상한을 두고 있는 조항으로서 장기체류 외국인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하다[24].

---

21) 법무부예규 제1094호
22) 차용호, 전게서, 387면.
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개정판 출입국관리법 해설, 2011., 293면.
24) 상게서, 294면.

이에 반해 제31조제1항 단서는 외국인등록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①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②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③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 수행자 및 그 가족이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서 외교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을 면제하는 규정이다[25]. 이와 별도로 국제협정에 따라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 국민 중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는 외국인등록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26].

(2) 절차 및 등록사항

외국인 등록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제33조)하고 개인별로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27]를 부여(제31조제4항)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25) 상게서, 294면.
26) 상게서, 294면.
27)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구분 번호, 등록년도 번호, 등록기관 번호 및 일련번호 등 13자리 숫자로 부여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거에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완전출국으로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그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부여받으며, 등록번호는 등록 당시 등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성별 구분번호는 1900년대 출생 남자는 5, 여자는 6, 2000년대 출생 남자는 7, 여자는 8번으로 구분하여 부여된다.

등록사항은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②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③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④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⑥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시행령 제47조는 ① 입국일자 및 입국항, ② 사증에 관한 사항, ③ 동반자에 관한 사항, ④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⑤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등록제도는 국가차원의 외국인 관리는 물론 체류와 체류시의 신분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체류정보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현황에 따른 이슈의 발굴 등을 통한 이민정책의 주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자료는 생활자료와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외국인의 법령위반이나 범죄수사 등에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반과 처벌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4조제19호). 부정사용이란 ①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②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③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④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⑤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같은 법 제33조의2).

3. 영주권제도

영주권은 외국인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주권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이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적취득이나 이민의 목적이 아니라 체류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어서 이민법제 전반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우리의 영주제도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체류유형 중 영주의 형태(F-5)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즉, 영주사증 발급대상자는 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② 국민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고액투자자(미화 50만달러 이상)로서 5인 이상 국민을 고용한 자, ④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⑥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⑦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⑧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⑨ 특정분야의 능력 소유자, ⑩ 특별공로자, ⑪ 해외연금 수혜자, ⑫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⑬ 거주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⑭ 법인 창업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등 요건을 갖춘 자, ⑮ 고액 투자자로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 등이다. 영주권의 자격요건은 충분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영주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만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종의 국내투자자 우대조치의 형식으로 영주권의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외국인의 체류자격) 28의3.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28]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외국인의 체류자격) 28의3. 영주(F-5)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

28)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외국인의 체류자격) 28의3. 영주(F-5)

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외국인의 체류자격) 28의3. 영주(F-5)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영주권을 인정받으면 체류기간은 기한의 제약이 없는 계속이며, 체류기간의 연장신청 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한다. 영주권의 신청절차는 재외공관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영주권이 인정되면 ① 재입국허가 면제되며, ② 제한 없는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③ 강제퇴거 역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자격의 취득과 상실은 이중국적의 문제로 충돌하지 않으며, 본국이나 체류국의 국적취득 등과 관련성이 있으나,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인정의 요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시행령의 요건 이외네 별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의 형식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영주권 취

득에 관한 요건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이 피료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이 조사는 현행 국내거주 외국인 다문화 정책의 입법적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2. 조사방법

<표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입법 전문가인 국회 관계자 200명 ※ 입법 전문가 구분 - 국회의원 - 의원보좌진 - 국회사무처 공무원 -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 근무자 - 지원기관 - 예산정책처 근무자 - 정당인
조사방법	일대일 대인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조사시기	2015. 5. 4.(월) ~ 2015. 5. 20.(화) : 3주간 실시
조사기관	(주) 더 월드 브릿지

3. 조사내용

<표 3>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 이민법(가칭) 제정과 그 시기 / 방향 ● 이민법(가칭)을 관할할 기구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방향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4. 응답자 특성

<표 4>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5**	**100.0**
성별	남성	152	74.1
	여성	53	25.9
연령별	20대	16	7.8
	30대	47	22.9
	40대	57	27.8
	50대	58	28.3
	60대 이상	22	10.7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미표시	5	2.4
소속별	국회의원	16	7.8
	의원보좌진	56	27.3
	국회사무처 공무원	38	18.5
	지원기관-입법조사처 근무자	34	16.6
	지원기관-예산정책처 근무자	18	8.8
	정당	43	21.0

이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4.1%이며 여성은 25.9%로 나타남.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는 7.8%, 30대는 22.9%, 40대는 27.8%, 50대는 28.3%, 60대 이상은 10.7%, 미표시자 2.4%로 40 ~ 50대가 응답자 주를 이루고 있음.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7.8%, 의원보좌진 27.3%, 국회사무처 공무원 18.5%, 지원기관-입법조사처 근무자 16.6%, 지원기관-예산정책처 근무자 8.8%, 정당 21.0%로 이루어져 있음.

제 2 절 조사결과 분석

※ 국내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고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게 되었습니다.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림 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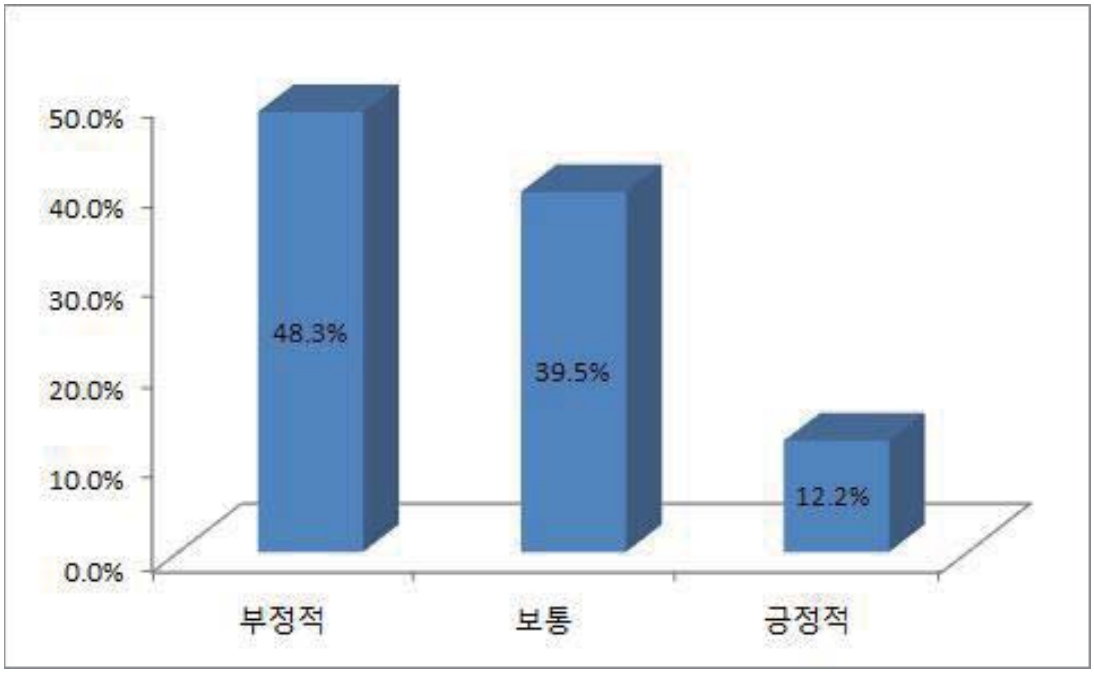

▣ 본 조사결과,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전문가의 48.3%는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문제점이 많음)를 보인 반면, 입법전문가의 12.2%만이 긍정적 평가(문제점이 없음)로 나타남.

<표 5>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Top2 (긍정)	Bottom2 (부정)
		문제점 매우 많다	<<<<<<		>>>>>>	문제점 없다		
전 체	205	5.9	42.4	39.5	12.2	0.0	12.2	48.3
성 별								
남 성	152	6.6	48.0	32.9	12.5	0.0	12.5	54.6
여 성	53	3.8	26.4	58.5	11.3	0.0	11.3	30.2
연 령 별								
20대	16	0.0	43.8	43.8	12.5	0.0	12.5	43.8
30대	47	4.3	42.6	44.7	8.5	0.0	8.5	46.8
40대	57	5.3	31.6	49.1	14.0	0.0	14.0	36.8
50대	58	5.2	53.4	25.9	15.5	0.0	15.5	58.6
60대 이상	22	18.2	31.8	40.9	9.1	0.0	9.1	50.0
미표시	5	0.0	80.0	20.0	0.0	0.0	0.0	80.0
소 속 별								
국회의원	16	25.0	68.8	0.0	6.3	0.0	6.3	93.8
의원보좌진	56	5.4	32.1	46.4	16.1	0.0	16.1	37.5
국회사무처 공무원	38	10.5	31.6	39.5	18.4	0.0	18.4	42.1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34	2.9	44.1	47.1	5.9	0.0	5.9	47.1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18	0.0	44.4	44.4	11.1	0.0	11.1	44.4
정당	43	0.0	53.5	37.2	9.3	0.0	9.3	53.5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응답자 중 어느 누구 하나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음. 성별에서는 남성 절반 이상(54.6%)이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50대는 58.6%, 60대 이상은 50.0%)이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응답함.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93.8%으로 타 소속들보다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뒤를 이어 정당 53.5%, 지원기관-입법조사처 근무자 47.1%, 지원기관-예산정책처 근무자 44.4%, 국회사무처 공무원 42.1%, 의원보좌진 37.5% 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남.

<표 6> 소속과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독립성 검증

구 분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계	χ^2(p)
		부정	보통	긍정		
소속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36 (50%)	26 (36.1%)	10 (13.9%)	72 (100%)	1.625 (0.804)
	입법지원기관(국회사무처 공무원,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근무자)	40 (44.4%)	39 (43.3%)	11 (12.2%)	90 (100%)	
	정 당	23 (53.5%)	16 (37.2%)	4 (9.3%)	43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하에서 소속과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간에는 상호 독립적임.(p-value=0.804) 즉, 어느 곳에 속해 있는 것과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임.

[1-2]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의 이유

👍 긍정적 견해의 이유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로는 지원·혜택적인 부분과 국민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찾아볼 수 있었음.

1. 지원·혜택적인 부분 : 현재 지원책이 충분히 풍부함. 교육, 상담, 문화,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2. 국민 인식에 대한 부분 : 이전에 비해 편견 등이 감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생각이 좋아졌음.

<표 7> 긍정적 견해의 이유

긍정적 견해의 이유 (지원·혜택 / 국민 인식)	
1	지원책 풍부
2	예전에 비해 편견 등 감소
3	통합 화합의 열린 다문화 정책 방향이 긍정적임
4	교육, 상담, 문화,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5	예전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생각이 좋아졌음
6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

👎 부정적 견해의 이유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로는 국민 및 정책입안자의 인식 부분과 정책 부분, 홍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음.

1. 국민 및 정책입안자의 인식

현재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취약함. 이에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인정하며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변화가 필요함.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이질감을 극복하고 긍지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국가 정책을 통한 '다문화 정책'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다양화보다는 보편화로 자리 잡음을 경계해야 하며 또한, 정책 입안자의 기본적 정책입안이 배타적 인식에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함.

2. 정책 부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며, 일괄적인 정책들이 필요함. 특히,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정책 미흡함. 또한, 다문화가 현실화 되어 있지만 현재의 정책은 너무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띰. 이해와 존중보다는 우리에게로의 포섭에 중점이 맞춰진 듯 하며, 내국인과 직접적 융화하는 정책의 부족함. 자녀들의 적응 동화 교육 과정 및 교육 정책이 부족함.

3. 홍보 부분

다문화의 불가피성,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4. 기 타

언론에 보도되는 외국인들의 흉악 범죄 행위 때문에 아직은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표 8> 부정적 견해의 이유

부정적 견해의 이유 (인식 / 정책 / 홍보 / 기타)	
인 식	우리의 의식구조가 취약 / 아직 편견 해소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임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은 평등하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이질감을 극복하고 긍지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내국인의 인식변화 필요
	국가정책을 통해 "다문화 정책"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보편화된 점을 경계
	기본적 정책의 입안이 배타적 인식에 기초로 함
정 책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책이 미비함. 특히,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정책 미흡함. 또한, 다문화가 현실화 되어 있지만 현재의 정책은 너무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띰
	이해와 존중보다는 우리에게로의 포섭에 중점이 맞춰진 듯 / 내국인과 직접적 융화하는 정책의 부족
	자녀들의 적응 동화 교육 과정 부족함
	일괄적인 정책이 필요
	외국인 차별, 다문화 정책 빈곤
	다문화 가정이 적응될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교육
	특별한 정책과 사업이 없다
	외국인이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
	장기적 목표 없는 일관성 없는 정책
	정책의 원칙과 이념이 정립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에 한국 정책과 다문화 가정이 좀 더 한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책 미흡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산업 인력 등 다문화 가족들과 상생하는 것이 필요함.
	제도적 미흡, 실행 미흡 등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함
홍 보	다문화의 불가피성,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하였기 때문
기 타	언론에 보도되는 외국인들의 흉악 범죄 행위 때문에

[2-1] 현재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정책은 출입국법,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법령들을 통합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2>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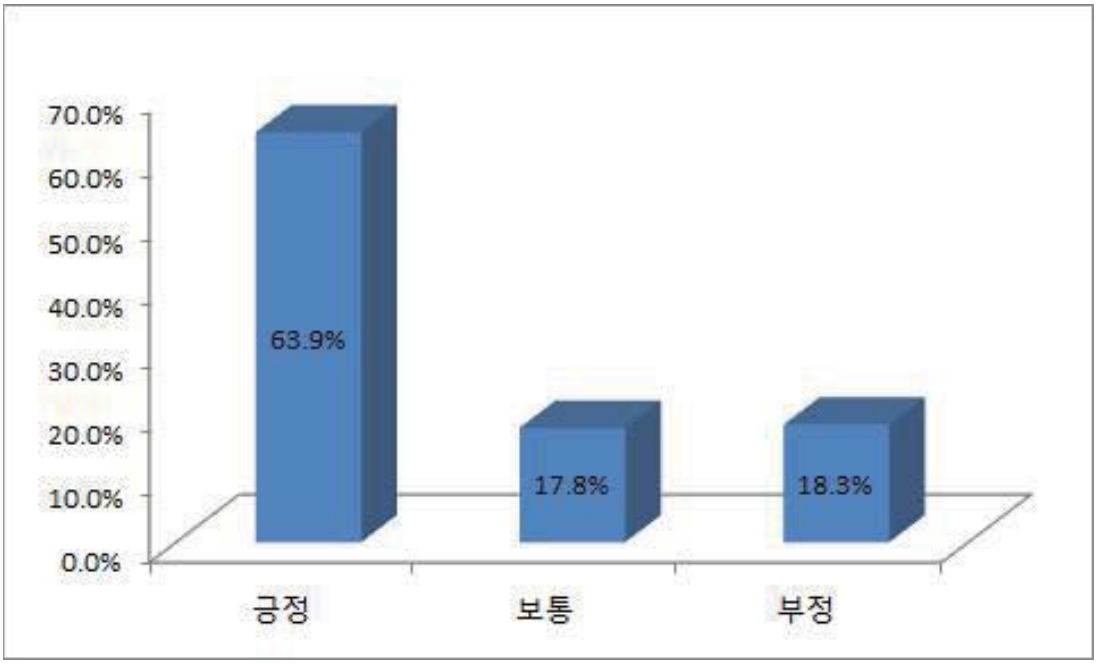

▣ 입법전문가 63.9%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18.3%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

<표 9>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부동의	부동의	보 통	동 의	매우 동의	Top2 (동의)	Bottom2 (부동의)
전 체	202	5.0	13.4	17.8	52.0	11.9	63.9	18.3
성 별								
남 성	149	5.4	14.8	9.4	55.0	15.4	70.5	20.1
여 성	53	3.8	9.4	41.5	43.4	1.9	45.3	13.2
연 령 별								
20대	16	0.0	0.0	43.8	56.3	0.0	56.3	0.0
30대	44	9.1	9.1	29.5	47.7	4.5	52.3	18.2
40대	57	7.0	24.6	17.5	40.4	10.5	50.9	31.6
50대	58	3.4	8.6	8.6	60.3	19.0	79.3	12.1
60대 이상	22	0.0	18.2	0.0	59.1	22.7	81.8	18.2
미표시	5	0.0	0.0	20.0	80.0	0.0	80.0	0.0
소 속 별								
국회의원	16	0.0	18.8	0.0	56.3	25.0	81.3	18.8
의원보좌진	53	0.0	17.0	13.2	54.7	15.1	69.8	17.0
국회사무처 공무원	38	10.5	18.4	21.1	44.7	5.3	50.0	28.9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34	0.0	0.0	47.1	50.0	2.9	52.9	0.0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18	22.2	11.1	22.2	44.4	0.0	44.4	33.3
정당	43	4.7	14.0	2.3	58.1	20.9	79.1	18.6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의 절반 이상(70.5%)이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연령대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60대 이상 81.8%, 50대 79.3%, 20대 56.3%, 30대 52.3% 순)이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81.3%로 타 소속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뒤를 이어 정당 79.1%, 의원보좌진 69.8%, 지원기관-입법조사처 근무자 52.9%, 국회사무처 공무원 50.0%, 지원기관-예산정책처 근무자 44.4% 순으로 나타남.

<표 10> 소속과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독립성 검증

구 분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			계	χ^2(p)
		부동의	보 통	동 의		
소속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12 (17.4%)	7 (10.1%)	50 (72.5%)	69 (100%)	22.109 (0.000)
	입법지원기관(국회사무처 공무원,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근무자)	17 (18.9%)	28 (31.1%)	45 (50.0%)	90 (100%)	
	정 당	8 (18.3%)	1 (2.3%)	34 (79.1%)	43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하에서 소속과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 간에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음.(p-value=0.000) 즉,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와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응답은 상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정당 (79.1%)이 국회의원실 (72.5%)와 입법 지원기관(50.0%)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6.6%p와 22.5%p 높음. 보통에 응답한 비율은 입법지원기관(31.1%)이 국회의원실(10.1%)와 정당(2.3%)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21%p와 28.8%p 높음. 부동의에 응답한 비율은 입법지원기관(18.9%)이 국회의원실(17.4%)와 정당(18.3%)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1.5%p와 0.6%p 높음.

[2-2] [문항 2-1의 ④, ⑤ 응답자만] 이민법 제정의 시기는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림 3> 이민법 제정의 시기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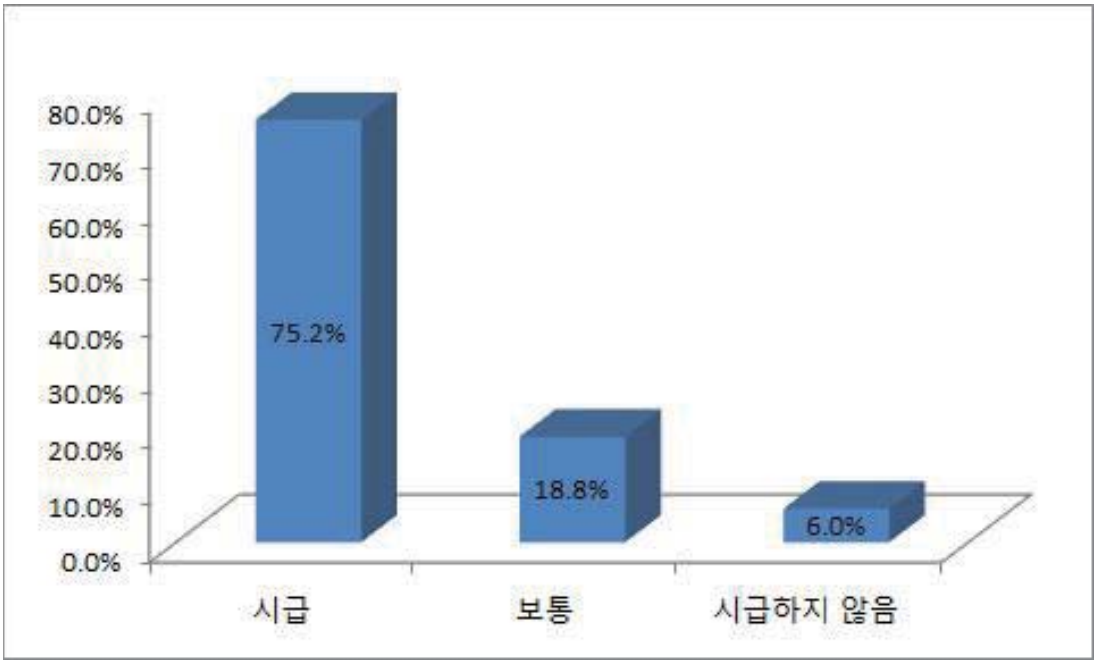

▣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 가운데, 이민법 제정의 시기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75.2%로 나타나며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남.

- 시급한 이유로는 앞으로 외국인 유입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하여 초기에 이민법(가칭)을 제정・정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표 11> 이민법 제정의 시기의 시급성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시급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보 통	시 급	매우 시급	Top2 (시급)	Bottom2 (시급하지 않음)
		필요성은 있으나, 시급한 문제아님	<<<<<< >>>>>>			당장 필요		
전 체	117	0.0	6.0	18.8	66.7	8.5	75.2	6.0
성 별								
남 성	94	0.0	7.4	11.7	70.2	10.6	80.9	7.4
여 성	23	0.0	0.0	47.8	52.2	0.0	52.2	0.0
연 령 별								
20대	8	0.0	0.0	50.0	37.5	12.5	50.0	0.0
30대	20	0.0	10.0	35.0	55.0	0.0	55.0	10.0
40대	24	0.0	0.0	8.3	87.5	4.2	91.7	0.0
50대	45	0.0	11.1	13.3	60.0	15.6	75.6	11.1
60대 이상	16	0.0	0.0	12.5	81.3	6.3	87.5	0.0
미표시	4	0.0	0.0	25.0	75.0	0.0	75.0	0.0
소 속 별								
국회의원	13	0.0	0.0	7.7	76.9	15.4	92.3	0.0
의원보좌진	31	0.0	9.7	22.6	54.8	12.9	67.7	9.7
국회사무처 공무원	18	0.0	0.0	22.2	77.8	0.0	77.8	0.0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13	0.0	0.0	30.8	69.2	0.0	69.2	0.0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8	0.0	25.0	25.0	50.0	0.0	50.0	25.0
정당	34	0.0	5.9	11.8	70.6	11.8	82.4	5.9

○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 가운데 이민법 제정의 시기는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여 과반수(남 80.9%, 여 52.2%)가 이민법 제정시기가 시급하다고 응답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도 과반수가 이민법 제정 시기가 시급하다고 응답함. 특히, 40대 91.7%와 60대 이상 87.5%는 이민법 제정 시기가 시급하다고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92.3%로 타 소속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민법 제정 시기가 시급하다고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정당 82.4%, 국회사무처 공무원 77.8%, 지원기관-입법조사처 근무자 69.2%, 의원보좌진 67.7%, 지원기관-예산정책처 근무자 50.0% 순으로 나타남.

[3-1]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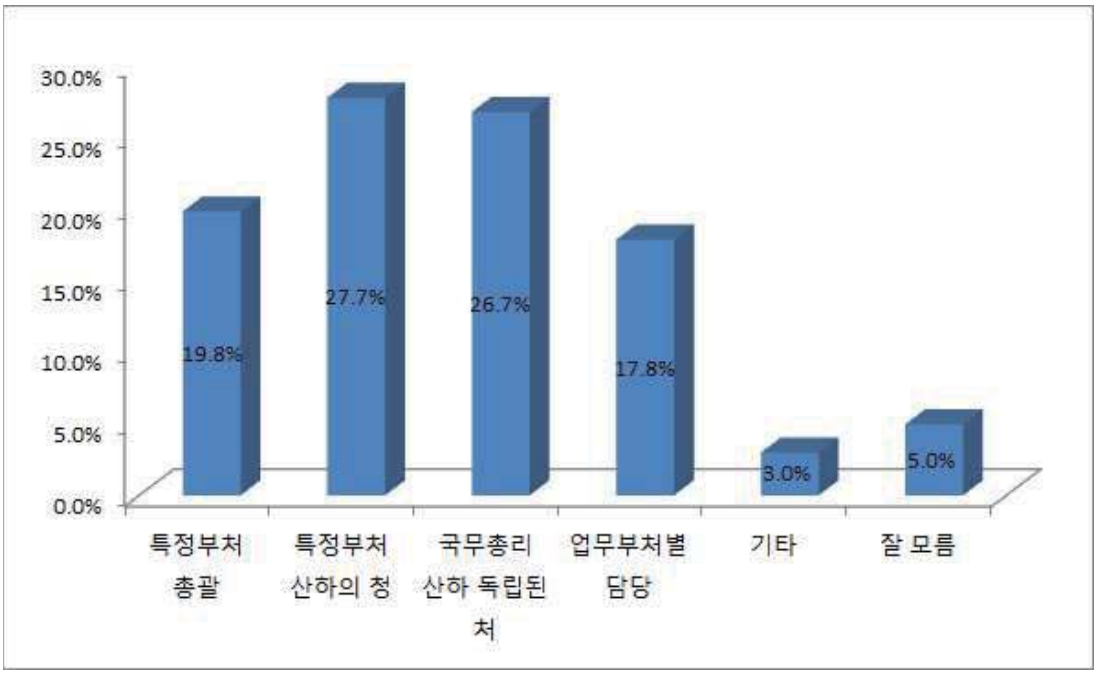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전문가의 19.8%는 특정부처 총괄로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나타났으며 입법전문가의 27.7%는 특정부처 산한의 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나타남. 입법전문가의 26.7%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나타났으며, 입법전문가의 17.8%가 업무부처별 담당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나타남. 기타 3.0%, 잘 모름 5.0%로 나타남.

-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다문화나 이민정책에 관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 따로 기구를 수시 증설하면 더욱 복잡해지고 예산이나 인력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재 존재하는 부·처·청 등 중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음

<표 12>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특정부처 총괄	특정부처 산하의 청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	업무부처별 담당	기 타	잘 모름
전 체	202	19.8	27.7	26.7	17.8	3.0	5.0
성 별							
남 성	149	22.1	25.5	32.9	13.4	3.4	2.7
여 성	53	13.2	34.0	9.4	30.2	1.9	11.3
연 령 별							
20대	16	31.3	6.3	6.3	37.5	0.0	18.8
30대	44	20.5	31.8	9.1	27.3	0.0	11.4
40대	57	12.3	29.8	26.3	21.1	7.0	3.5
50대	58	17.2	32.8	36.2	10.3	3.4	0.0
60대 이상	22	22.7	18.2	59.1	0.0	0.0	0.0
미표시	5	80.0	20.0	0.0	0.0	0.0	0.0
소 속 별							
국회의원	16	6.3	6.3	87.5	0.0	0.0	0.0
의원보좌진	53	17.0	37.7	15.1	22.6	0.0	7.5
국회사무처 공무원	38	18.4	31.6	15.8	26.3	2.6	5.3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34	11.8	26.5	32.4	23.5	0.0	5.9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18	38.9	16.7	22.2	11.1	0.0	11.1
정당	43	27.9	25.6	25.6	9.3	11.6	0.0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32.9%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34%는 특정부처 산하의 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7.5%는 업무부처별 담당, 30대 31.8%와 40대 29.8%는 특정부처 산하의 청, 50대 36.2%와 60대 이상 59.1%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함.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87.5%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 의원보좌진 37.7%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31.6%는 특정부처 산하의 청,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 근무자 31.4%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 지원기관 - 예산정책처 근무자 38.9%와 정당 27.9%은 특정부처 총괄에서 관할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함.

<표 13> 소속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에 대한 독립성 검증

구 분		문항 3-1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					계	χ^2(p)
		특정부처 총괄	특정부처 산하의 청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	업무부처별 담당	기 타		
소 속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10 (15.4%)	21 (32.3%)	22 (33.8%)	12 (18.5%)	0 (0%)	65 (100.0%)	19.722 (0.011)
	입법지원기관 (국회사무처 공무원, 지원기관-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근무자)	18 (21.4%)	24 (28.6%)	21 (25.0%)	20 (23.8%)	1 (1.2%)	84 (100.0%)	
	정 당	12 (27.9%)	11 (25.6%)	11 (25.6%)	4 (9.3%)	5 (11.6%)	43 (10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하에서 소속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을 묻는 의견 간에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음.(p-value=0.011) 즉,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와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에 대한 응답 간에는 상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에 대한 응답 중 특정부처 총괄이 낫다는 응답은 정당(27.9%)이 국회의원실(15.4%)와 입법지원기관(21.4%)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12.5%p와 6.5%p 높음. 특정부처 산하의 청이 낫다는 응답은 국회의원실(32.3%)이 입법지원기관(28.6%)와 정당(25.6%)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3.7%p와 6.7%p 높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처가 낫다는 응답은 국회의원실(33.8%)이 입법지원기관(25.0%)와 정당(25.6%)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8.8%p와 8.2%p 높음. 업무부처별 담당이 낫다는 의견은 입법지원기관(23.8%)이 국회의원실(18.5%)와 정당(9.3%)보다 상대적으로 각각 5.3%p와 14.5%p 높음.

[3-2] [문항 3-1의 ① 응답자만[29]] 만약 특정부처가 총괄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 특정부처 중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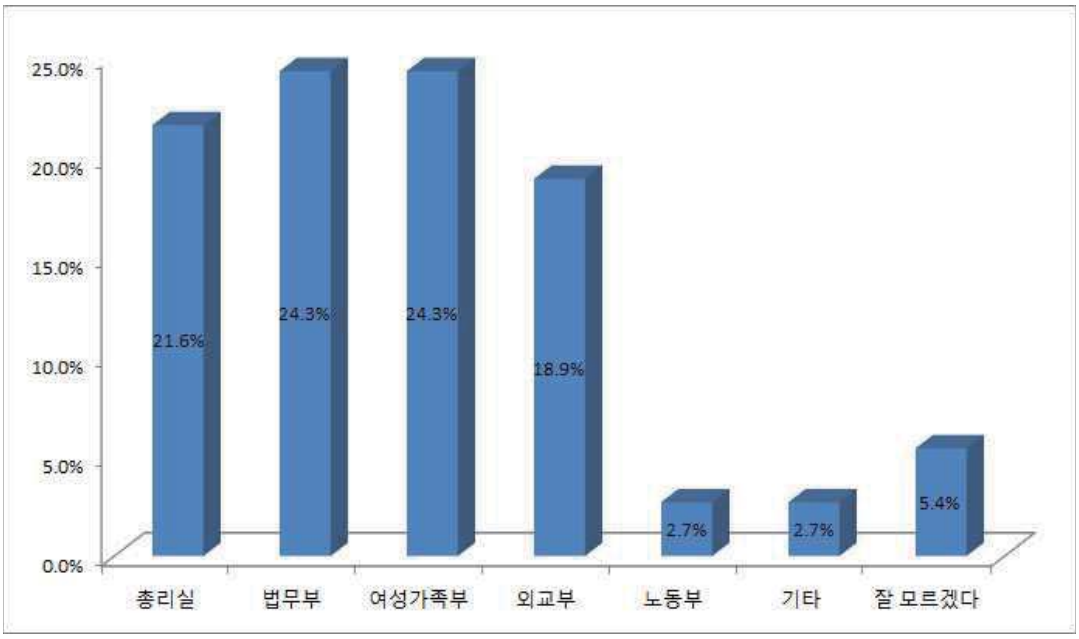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으로 특정부처 총괄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리실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의 응답자는 21.6%이며,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의 응답자는 24.3%로 나타남. 여성가족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의 응답자는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24.3%로 나타났으며 외교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의 응답자는 18.9%로 나타남. 노동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의 응답자는 2.7%, 기타 기관이 맡는 것이 적정하다의 응답자는 2.7%,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5.4%로 나타남.

29) 문항 3-1에서 ①특정부처 총괄을 선택한 응답자 중 문항 3-2에서 미응답자가 발생하여, 3-1의 해당 빈도수와 3-2문항의 전체 사례수가 서로 다름을 유의.

<표 14> 특정부처 중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총리실	법무부	여성 가족부	외교부	노동부	기 타	잘 모름
전 체	37	21.6	24.3	24.3	18.9	2.7	2.7	5.4
성 별								
남 성	30	10.0	30.0	26.7	23.3	0.0	3.3	6.7
여 성	7	71.4	0.0	14.3	0.0	14.3	0.0	0.0
연 령 별								
20대	5	0.0	60.0	20.0	0.0	20.0	0.0	0.0
30대	8	25.0	0.0	37.5	12.5	0.0	0.0	25.0
40대	7	42.9	0.0	57.1	0.0	0.0	0.0	0.0
50대	10	20.0	50.0	0.0	30.0	0.0	0.0	0.0
60대 이상	3	0.0	33.3	33.3	33.3	0.0	0.0	0.0
미표시	4	25.0	0.0	0.0	50.0	0.0	25.0	0.0
소 속 별								
국회의원	1	0.0	0.0	0.0	100.0	0.0	0.0	0.0
의원보좌진	8	12.5	37.5	25.0	25.0	0.0	0.0	0.0
국회사무처 공무원	7	28.6	0.0	42.9	0.0	14.3	14.3	0.0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4	25.0	25.0	50.0	0.0	0.0	0.0	0.0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7	28.6	28.6	0.0	14.3	0.0	0.0	28.6
정당	10	20.0	30.0	20.0	30.0	0.0	0.0	0.0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으로 특정부처 총괄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30%는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고 응답한 반면, 여성 71.4%는 총리실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고 응답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60%는 법무부, 30대 37.5%와 40대 57.1%는 여성가족부, 50대 50%는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60대 이상은 법무부 33.3% 또는 여성가족부 33.3% 또는 외교부 33.3%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외교부, 의원보좌진의 37.5%는 법무부,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42.9%와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 근무자의 50%는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 예산정책처 근무자는 총리실 28.6% 또는 법무부 28.6%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3-3] [문항 3-1의 ② 응답자만[30]] 만약,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6>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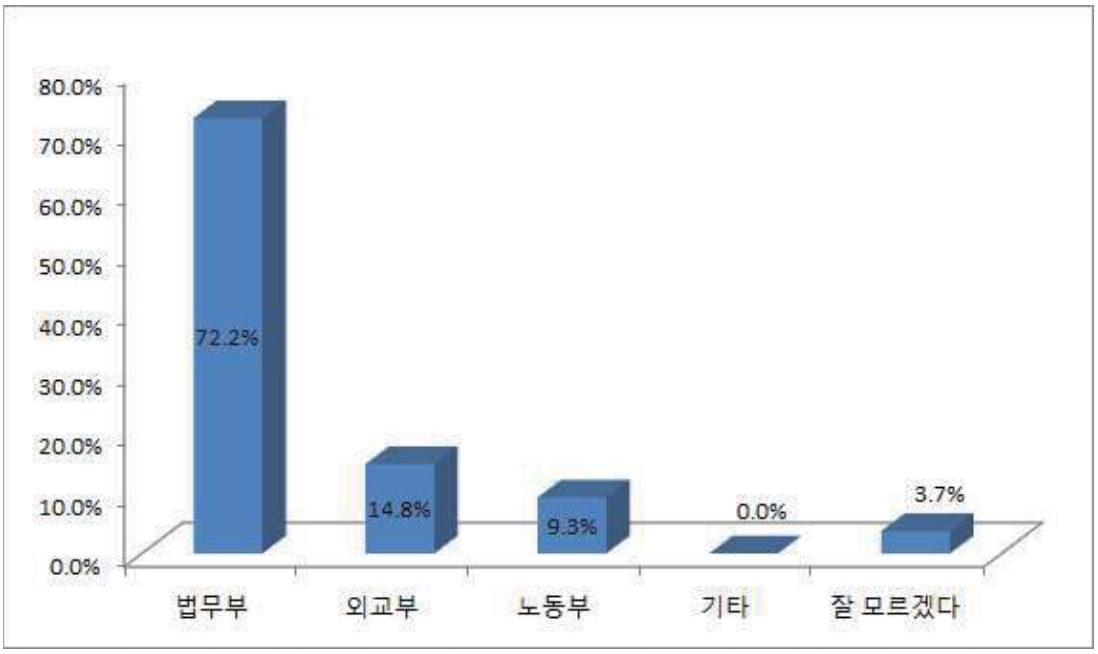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으로 특정부처 산하의 청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만약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교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8% 뒤를 이어 나타남. 이 뒤로 노동부 9.3%, 잘 모르겠다 3.7%, 기타 0.0%로 나타남.

30) 문항 3-1에서 ②특정부처 산하의 청을 선택한 응답자 중 문항 3-3에서 미응답자가 발생하여, 3-1의 해당 빈도수와 3-3문항의 전체 사례수가 서로 다름을 유의.

<표 15>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법무부	외교부	노동부	기 타	잘 모름
전 체	54	72.2	14.8	9.3	0.0	3.7
성 별						
남 성	37	78.4	5.4	10.8	0.0	5.4
여 성	17	58.8	35.3	5.9	0.0	0.0
연 령 별						
20대	1	0.0	100.0	0.0	0.0	0.0
30대	14	57.1	28.6	0.0	0.0	14.3
40대	15	100.0	0.0	0.0	0.0	0.0
50대	19	78.9	15.8	5.3	0.0	0.0
60대 이상	4	25.0	0.0	75.0	0.0	0.0
미표시	1	0.0	0.0	100.0	0.0	0.0
소 속 별						
국회의원	1	100.0	0.0	0.0	0.0	0.0
의원보좌진	19	78.9	21.1	0.0	0.0	0.0
국회사무처 공무원	11	72.7	9.1	0.0	0.0	18.2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9	77.8	11.1	11.1	0.0	0.0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3	33.3	0.0	66.7	0.0	0.0
정당	11	63.6	18.2	18.2	0.0	0.0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으로 특정부처 산하의 청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만약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의 78.4%와 여성의 58.8%가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고 응답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00%는 외교부, 30대 57.1%와 40대 100% 그리고 50대 78.9%가 법무부, 60대 이상 75%는 노동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100%과 의원보좌진 78.9%, 국회사무처 공무원 72.7%,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 근무자 77.8%는 법무부, 지원기관 - 예산정책처 근무자 66.7%는 노동부, 정당 63.6%는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4-1〕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7> 현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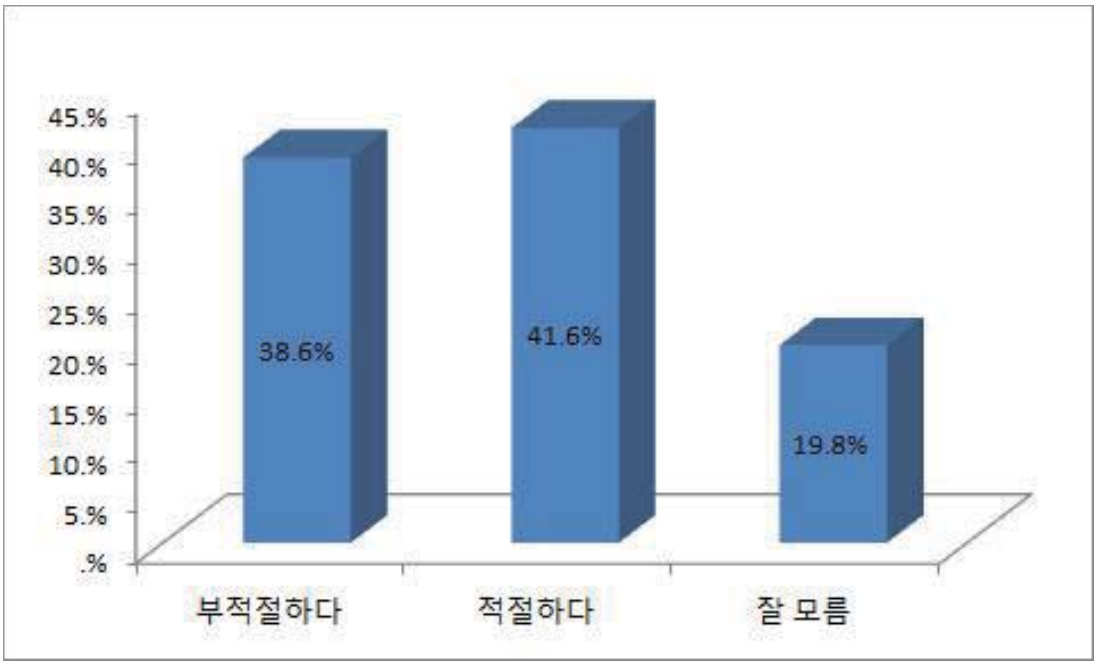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 의견의 응답자는 38.6%로 나타나며, 적절하다는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41.6%로 나타남. 잘 모름은 19.8%로 나타남.

<표 16>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한 의견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잘 모름
전 체	202	38.6	41.6	19.8
성 별				
남 성	149	40.9	43.0	16.1
여 성	53	32.1	37.7	30.2
연 령 별				
20대	16	31.3	37.5	31.3
30대	44	31.8	31.8	36.4
40대	57	36.8	45.6	17.5
50대	58	37.9	50.0	12.1
60대 이상	22	63.6	27.3	9.1
미표시	5	40.0	60.0	0.0
소 속 별				
국회의원	16	56.3	37.5	6.3
의원보좌진	53	30.2	45.3	24.5
국회사무처 공무원	38	28.9	47.4	23.7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34	47.1	29.4	23.5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18	22.2	44.4	33.3
정당	43	51.2	41.9	7.0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여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7.5%는 적절하다, 30대 36.4%는 잘 모름, 40대 45.6%와 50대 50%는 적절하다, 60대 이상 63.6%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함.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56.3%는 부적절하다, 의원보좌진 45.3%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47.4%는 적절하다,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 근무자(47.1%)는 부적절하다, 지원기관 - 예산정책처 근무자 44.4%는 적절하다, 정당 51.2%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함.

<표 17> 소속과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독립성 검증

구 분		문항 4-1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의견		계	χ^2(p)
		부적절	적 절		
소 속	국회의원실(국회의원, 의원보좌진)	25 (45.5%)	30 (54.5%)	55 (100%)	1.007 (0.604)
	입법지원기관 (국회사무처 공무원, 지원기관-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근무자)	31 (46.3%)	36 (53.7%)	67 (100%)	
	정 당	22 (55.0%)	18 (45.0%)	40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하에서 소속과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의견 간에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음.(p-value=0.604) 즉,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와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 간에는 상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

(4-2) [문항 4-1의 ① 응답자만] 영주권제도를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8> 영주권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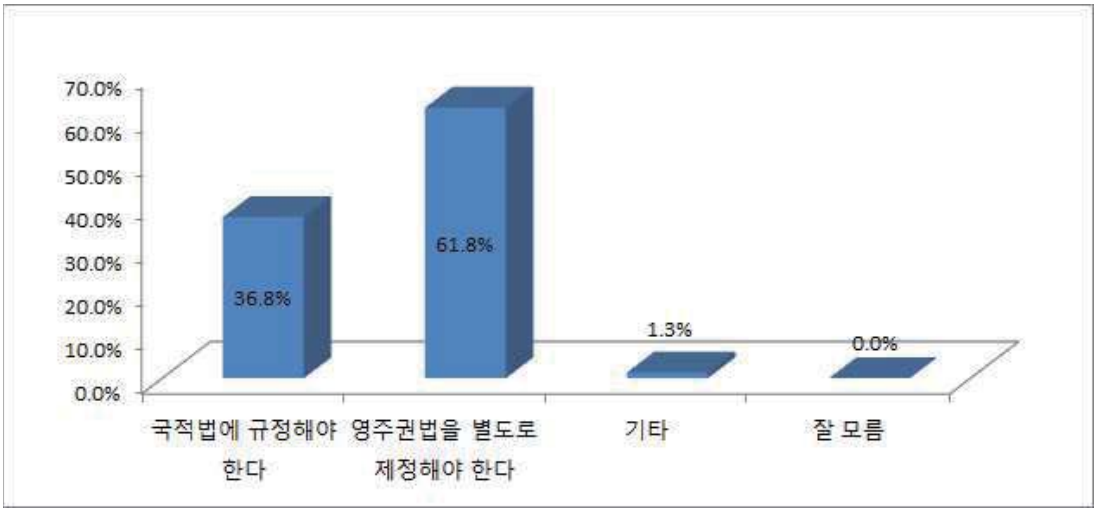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 의견의 응답자 가운데,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 '국적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6.8%, 기타 1.3%, 잘 모름 0% 순으로 나타남.

<표 18> 영주권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국적법에 규정해야 한다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기 타	잘 모름
전 체	76	36.8	61.8	1.3	0.0
성 별					
남 성	59	39.0	59.3	1.7	0.0
여 성	17	29.4	70.6	0.0	0.0
연 령 별					
20대	5	20.0	80.0	0.0	0.0
30대	14	42.9	57.1	0.0	0.0
40대	21	33.3	61.9	4.8	0.0
50대	22	40.9	59.1	0.0	0.0
60대 이상	12	33.3	66.7	0.0	0.0
미표시	2	50.0	50.0	0.0	0.0
소 속 별					
국회의원	9	33.3	66.7	0.0	0.0
의원보좌진	16	43.8	56.3	0.0	0.0
국회사무처 공무원	11	27.3	72.7	0.0	0.0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16	25.0	68.8	6.3	0.0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4	50.0	50.0	0.0	0.0
정당	20	45.0	55.0	0.0	0.0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59.3%와 여성 70.6% 모두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의 응답자 중 20대 80%가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60대 이상 66.7%, 40대 61.9%, 50대 59.1%, 30대 57.1% 순으로 나타남. 소속별로 살펴보면 지원기관-예산정책처 근무자를 제외한 소속들이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타남. 특히, 소속들 중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72.7%가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뒤를 이어 지원기관-입법조사처 근무자 68.8%, 국회의원 66.7%, 의원보좌진 56.3%, 정당 55.0% 순으로 나타남.

[5] 재외동포 750만 시대입니다. 이 중 국내거주 재외동포(외국적 포함)도 70여만 명에 달합니다.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9>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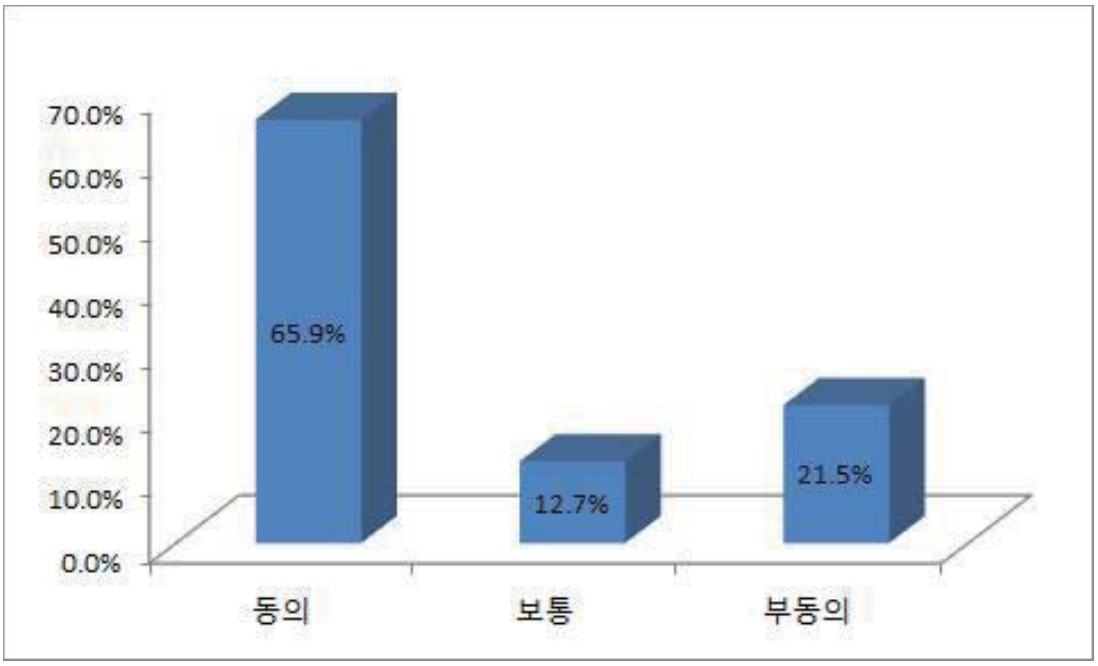

▣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입법전문가의 65.9%에 달하고, 부동의하는 응답자는 입법전문가의 21.5%로 나타남. 보통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12.7%로 나타남.

<표 19>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구 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부동의	Top2 (동의)	Bottom2 (부동의)
전 체	205	3.4	18.0	12.7	56.1	9.8	65.9	21.5
성 별								
남 성	152	3.3	18.4	10.5	55.3	12.5	67.8	21.7
여 성	53	3.8	17.0	18.9	58.5	1.9	60.4	20.8
연 령 별								
20대	16	0.0	0.0	18.8	75.0	6.3	81.3	0.0
30대	47	4.3	17.0	10.6	68.1	0.0	68.1	21.3
40대	57	1.8	24.6	15.8	50.9	7.0	57.9	26.3
50대	58	6.9	15.5	12.1	55.2	10.3	65.5	22.4
60대 이상	22	0.0	18.2	4.5	36.4	40.9	77.3	18.2
미표시	5	0.0	40.0	20.0	40.0	0.0	40.0	40.0
소 속 별								
국회의원	16	0.0	6.3	0.0	31.3	62.5	93.8	6.3
의원보좌진	56	1.8	16.1	12.5	62.5	7.1	69.6	17.9
국회사무처 공무원	38	10.5	15.8	10.5	57.9	5.3	63.2	26.3
지원기관 입법조사처 근무자	34	0.0	23.5	14.7	58.8	2.9	61.8	23.5
지원기관 예산정책처 근무자	18	0.0	16.7	11.1	72.2	0.0	72.2	16.7
정당	43	4.7	23.3	18.6	46.5	7.0	53.5	27.9

○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67.8%, 여성 60.4%는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부동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20대는 81.3%로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60대 이상 77.3%, 30대 68.1%, 50대 65.5%, 40대 57.9%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속별로 살펴보면 타 세부 구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국회의원 93.8%, 지원기관-예산정책처 근무자 72.2%, 의원보좌진 69.6%, 국회사무처 공무원 63.2%, 지원기관-입법조사처 근무자 61.8, 정당인 53.5% 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 소속과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독립성 검증

구 분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			계	χ^2(p)
		부동의	보 통	동 의		
소 속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11 (15.3%)	7 (9.7%)	54 (75.0%)	72 (100%)	5.904 (0.206)
	입법지원기관 (국회사무처 공무원, 지원기관-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근무자)	21 (23.3%)	11 (12.2%)	58 (64.4%)	90 (100%)	
	정 당	12 (27.9%)	8 (18.6%)	23 (53.5%)	43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하에서 소속과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 간에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음.(p-value=0.206) 즉,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와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 간에는 상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

[6] 기타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들을 억지로 한국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보다 차이나타운, 인도 타운 등 독자적 공간 지원, 독자적 언어, 문화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다문화 보장인지 다문화를 한국 문화로 편입시켜 한국 문화만 강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봄
2	종합 대책이 부족함. 각 부처별로 실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3	현실적인 다문화가 아닌 실질적인 다문화정책 필요함. 즉, 바로 앞 현실에 맞닥뜨린 문제만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2차 3차 문제점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함.
4	다문화 가정의 채용 확대 건의
5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함
6	편견 해소와 차별 대우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필요함
7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현행 유지해도 된다.
8	선진국의 실례에 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필요함
9	무조건적 차별은 철폐하고, 이유 있는 합리적인 차별을 하자
10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차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이 시급함

11	정부와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함
12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함
13	다문화 자녀들의 군대 문제 (가혹 행위, 차별 문제) 해결이 필요함
14	내국인들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절실
15	다문화정책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미래까지 생각해서 시행되어야 함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함. 이 컨트롤타워가 다문화정책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부처 간의 정책조정하고 지자체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함. 집중적으로 신경써주는 다문화나 이민정책 관련된 기관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환경변화, 인식변화, 제도변화가 시급함

제 3 절 문항 간 교차 및 상관 분석

문항 간 분석 1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와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한 교차분석

<표 21>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교차표

구 분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			계	χ^2(p)
		부동의	보 통	동 의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부 정	15 (15.6%)	12 (12.5%)	69 (71.9%)	96 (100%)	8.648 (0.071)
	보 통	14 (17.3%)	20 (24.7%)	47 (58.0%)	81 (100%)	
	긍 정	8 (32.0%)	4 (16.0%)	13 (52.0%)	25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 하에서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동의/보통/부동의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음. (p-value=0.071)

즉,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보통/긍정 응답자 간에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차이가 없고,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부동의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문항 간 분석 2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와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의 교차분석

<표 22>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의 교차표

구 분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계	χ^2(p)
		부적절	적 절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부 정	51 (64.6%)	28 (35.4%)	79 (100%)	23.217 (0.000)
	보 통	25 (41.0%)	36 (59.0%)	61 (100%)	
	긍 정	2 (9.1%)	20 (90.9%)	22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 하에서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음.(p-value=0.000)

즉,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응답자는 현재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평가가 긍정적인 응답자는 현재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문항 간 분석 3 —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와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한 교차분석

<표 23>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교차표

구 분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계	χ^2(p)
		부동의	보 통	동 의		
문항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부 정	19 (19.2%)	5 (5.1%)	75 (75.8%)	99 (100%)	19.851 (0.001)
	보 통	20 (24.7%)	12 (14.8%)	49 (60.5%)	81 (100%)	
	긍 정	5 (20.0%)	9 (36.0%)	11 (44.0%)	25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 하에서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음.(p-value=0.001)

즉,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응답자는 현재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평가가 긍정적인 응답자는 현재 외국인의 영주권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문항 간 분석 4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과 문항 3-1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곳이 나은지에 대한 교차분석

<표 24>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 3-1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곳이 나은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문항 3-1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곳이 나은지에 대한 문항					계	χ^2(p)
		특정 부처 총괄	특정부처 산하의 청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	업무 부처별 담당	기 타		
문항 2-1 이민법 (가칭)을 제정 하자는 주장	부동의	3 (9.1%)	2 (6.1%)	8 (24.2%)	15 (45.5%)	5 (15.2%)	33 (100%)	67.350 (0.000)
	보 통	4 (12.9%)	9 (29.0%)	4 (12.9%)	13 (41.9%)	1 (3.2%)	31 (100%)	
	동 의	33 (25.8%)	45 (35.2%)	42 (32.8%)	8 (6.3%)	0 (0%)	128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 하에서 출입국법,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근로기준법 등에 산재해 있는 법령들을 통합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동의/보통/동의하는 응답자 간에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 중 어느 곳이 나은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음.(p-value=0.000)

즉,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동의/보통 응답자는 업무부처별 담당자가 맡는 것이 낫다고 보는 반면,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특정부처(25.8%)/특정부처 산하의 청(35.2%)/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32.8%)에서 맡는 것이 낫다고 봄으로 판단됨.

문항 간 분석 5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과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에 대한 교차분석

<표 25>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과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의 교차표

구 분		문항 4-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계	χ^2(p)
		부적절	적 절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	부동의	10 (27.0%)	27 (73.0%)	37 (100%)	9.349 (0.009)
	보 통	15 (62.5%)	9 (37.5%)	24 (100%)	
	동 의	53 (48.1%)	48 (51.9%)	101 (100%)	
* 유의수준 0.05					

유의수준 0.05 하에서 출입국법,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근로기준법 등에 산재해 있는 법령들을 통합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동의/보통/동의하는 응답자 간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음.(p-value=0.009)

즉, 출입국법,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근로기준법 등에 산재해 있는 법령들을 통합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동의 하는 응답자는 현재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통 내지 동의하는 응답자는 부적절하다고 봄으로 판단됨.

문항 간 분석 6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과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에 대한 상관 관계 분석

<표 26>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 *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상관계수

구 분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문항 2-1 법령 통합하여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	Pearson 상관계수 (p-value)	1	0.101 (0.152)
	N	202	202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Pearson 상관계수 (p-value)	0.101 (0.152)	1
	N	202	205
* p-value 기준 0.05			

유의수준 0.05 하에서 문항 2-1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의 응답과 문항 5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 간의 직선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음. (p-value = 0.152)

즉,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여,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음.

제 4 장 이민법제로의 주요 개선방안 검토

제 1 절 논의의 출발점

통합된 하나의 이민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외국인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주요 요건에서 출발하고 있다[31].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32] 기존에 외국인의 관리를 위한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1965년)에 기반한 법령체계에서 1990년 통일 이후 장기 체류 외국인의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발생함으로써 통합이민법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학・정보・자연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되는 저임금 산업 특히 농업분야의 인력수용 발생을 감당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에 국적법과 재외거류국민의 국내이주, 유럽연합회원국 국민의 지위, 제3국 국민의 체류와 영주, 난민인정절차로 구성된 독일 통합이민법[33]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통합된 이민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외국인 수요 등 정책적 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

31) 주요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는 한경구 외 6인,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용역보고서, 2012. 참조

32) 이에 관한 사항은 김환학 외 6인,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19-21면을 정리한 것임.

33) Zuwanderungsgesets, (정식명칭) Das 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der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halts und der Intergration von Unionsbürgern und Ausländern

정책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다수의 법령에 분포되어 있는 이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34]. 하지만 관련 법령을 어떠한 체계로 종합하고 체계화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이민 관련 법령 중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이민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법령체계를 두고 영주권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의 법령으로 규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는 달리 조직법으로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민법제의 개편방향

1. 외국인처우법을 이민법으로 변경하는 방안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으로 약칭한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 즉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는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처우와 난민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한 입법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와 상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34) 이민자의 재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로 이혜경 외 2인, 이민자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9. 참조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법 제2조제1호)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별도로 '결혼이민자'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처우법은 재한외국인을 국민과 별도의 관계속에서 처우하는 것이 당연한 조처라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외국인도 동일한 권리·의무를 누리는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명과 정책의 내용을 이민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입법론적 관점에서 적정할 것이다[3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민법」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2 조 정의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 2 장 이민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 5 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 5 조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제 6 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 6 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 7 조 업무의 협조	제 7 조 업무의 협조

35) 사회통합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가칭) 다문화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유의정,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0. 40면 참조)

제 8 조 외국인정책위원회	제 8 조 이민정책위원회
제 9 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제 9 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제 3 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 3 장 이민자 등의 처우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0조 이민자 등의 인권옹호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1조 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제14조 난민의 처우	제14조 난민의 처우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 4 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 4 장 국민과 이민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9조 세계인의 날	제19조 세계인의 날
제 5 장 보칙	제 5 장 보칙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20조 이민자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정책은 이민정책으로 변화시키고, 이민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담는 입법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민법으로 전환과정에 있어서 다문화정책과 외국인노동자정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연계하여 정책적 연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처우법에 따른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그 의의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물론 제2차 기본계획 역시 본질적으로 이민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36].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제 역시 이민법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외국인처우법은 이민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방안으로서 이민청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이민자에 관한 규율은 국적, 출입국 담당부처와 다문화정책부처, 외국인노동자정책부처 등으로 나누어 있어서 그 규율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집행·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이민청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7].

이민청은 외국인등록제도에 기초한 이민자관리업무와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관리 등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불법체류자에 관한 사항을 이민청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보다 깊이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확대하여 개편하는 방안을

36) 법무부,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2. 7면;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영문명칭 역시 'Korea Immigration Service'로 하고 있음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2015. 8. 20 검색)

37) 이민청의 신설에 관하여는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271면 이하 참조.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조직은 두고 새롭게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 권한관계 등에 있어서 국내거주 이민자 관리의 측면이 부각될 것이며, 출입국 등에 있어서는 그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한 형식으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의 출입국관리의 부수업무 정도로 한정된 외국인보호소의 관리업무와 외국인지원센터의 역할 등은 보다 확대 개편될 것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역할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청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민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이민법에 두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이민청이 소속되는 부의 조에 별도의 항으로 설치근거와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별도의 독립법률에 관련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설치근거 규정과 책임자인 이민청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기관의 파견·겸임 관련 규정을 두는 형식으로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00조(00부) 제0항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00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둔다. 제0항 이민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민법」 제00조(이민청의 설치 등) ① 이민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이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00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둔다. ② 이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이민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이민청장의 업무) 이민청장은 이민업무 및 이민자 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제00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이민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민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민법 시행령」 또는 별도의 직제규정(「이민청 직제」 및 「이민청 직제 시행규칙」) 제00조(직무) 제00조(하부조직) 제00조(차장) 제00조 이하 실·국의 조직과 관련 업무 규정 제00조(위임규정) 제00조(이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00조(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3. 영주권 제도의 입법화 필요

현행 체류기반의 영주권 제도 운영은 외국인의 체류제도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영주권제도의 본질에 맞는 제도적 방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민법 내에 이민의 사전적 수단 혹은 이민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주권제도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영주권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38].

38) 영주권제도와 국적취득을 연계하는 방안과 영주권의 확대에 관한 사항은 김정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영주비자[39]는 이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영주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비자의 종류에는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40], 난민/망명, 다양성이민비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이민유형별로 그 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다[41]. 캐나다[42]도 비자의 종류를 단기비자소지자와 영주비자소지자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영주비자는 가족초청이민비자, 경제이민비자, 난민이민비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경제이민비자는 전문인력이민, 캐나다경험자이민, 비즈니스이민, 입주도우미이민, 주정부이민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영주권의 부여가 아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체류허가(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의 관점으로 영주제도[43]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영주자[44]와 일반영주자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영주자의 경우 다양한 요건[45]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3면 이하 참조.

39) 이에 관하여는 김환학 외 6인, 전게보고서, 61-63면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40) 취업이민은 다섯 가지 우선 순위(최우수인력, 우수한 능력자, 공급부족 숙련・비숙련노동자, 일부 특별이민자, 고용창출투자자)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제2・3순위 취업이민을 고용주의 신청서와 노동인증서(노동부발급)가 필요.

41) 가장 많은 경우가 가족초청의 경우이며, 그 다음 순이 취업비자의 경우이다. 그 중 특이한 사항은 다양성 비자에 관한 것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이 비교적 낮은 출신국(low-admission country)의 국민으로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2년 이상의 작업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된다. 미국의 영주권제도에 관한 사항은 이희정 외 2인, 다문화사회의 통합증진방안으로서의 영주권제도-미국 영주권제도 분석・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9.12. 참조

42) 주요 내용은 김환학 외 6인, 전게보고서, 75-78면에서 인용하여 정리함.

43) 이와 별도로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PR)은 EEA(유럽경제지역 19개국)와 스위스 국민 및 그들 가족에만 부여(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주권편람, 외교부, 2015. 127면)

44) 특별영주자는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발생한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 및 대만출신자와 그 자손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45) 품행이 선량할 것과 일본이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으며,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이민법제에 관하여는 山田利行 외 4인, 新しい入管法, 有斐閣, 2010. 참조.

다른 국가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영주권은 이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이민자와 이민자의 경우로 나누어 관리하고, 이민자에 관한 사전적 체류형태의 하나로서의 영주권제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46].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취득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권리(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국민의 법적지위에 준하는 보장이라던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 출입국과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아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준하여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더불어 영주권자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준하는 강제퇴거 금지의 원칙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주권에 관한 법률[47]

제 1 조(목적)
제 2 조(정의)
제 3 조(상호주의)
제 4 조(정부의 책무)
제 5 조(영주권의 부여 등)
제 6 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 7 조(영주권 취득의 요건)
제 8 조(영주권의 신청)
제 9 조(영주권등록증 및 등록원부작성 등)

제1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1조(영주권등록증의 재발급)
제12조(영주권의 소멸과 등록증의 반납)
제13조(강제퇴거의 배제 등)

46)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영주권 편람에 따르면 조사대상국가 중 영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91개국이며, 영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62개국으로 조사되었다. 유럽국가 중 영주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그리스, 벨기에, 헝가리 등이 있다.

47) 부록 2에 제시된 법률안의 목차를 제시한 것임

제14조(주민등록증등과의 관계)
제15조(출입국)
제16조(부동산 거래 등)
제17조(금융거래 등)
제18조(의료보험, 국민연금)
제19조(교육)
제20조(납세의 의무)

참 고 문 헌

□ 국내외 문헌

· 김정순,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 김환학 외 6인,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 박귀천 · 이유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법무부,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2.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개정판 출입국관리법 해설, 2011.

· _____, 2013년 출입국 · 외국인정책 연감, 2013.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주권편람, 외교부, 2015.

· 유길상 외 3인,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 유의정, 저출산 ·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사”,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 이혜경 외 2인, 이민자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9.
- 이희정 외 2인, 다문화사회의 통합증진방안으로서의 영주권제도-미국 영주권제도 분석・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9.12.
- 임동진, 다문화정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 정기선 편, 이선미 외 10인,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2015.
- 최윤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저스티스(한국법학원) 통권 제134-2호, 2013.
- 山田利行 외 4인, 新しい入管法, 有斐閣, 2010.
- Gary P. Freeman,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4), 1995.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United Nations(New York), 1998.

□ 관련 판례

- 서울 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 인터넷자료

- http://www.immigration.go.kr(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458700(네이버 사전)

부 록

부 록 1 : 이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문가 설문지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지

ID

이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연구조사 전문기관 (주)더월드브릿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로 대한민국 국회 관계자(국회의원, 의원보좌진, 사무처공무원 및 지원기관(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현행 재한 외국인 다문화 정책의 입법적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과 의견은 오로지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법에 의해 개인정보와 비밀이 엄격히 유지·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협조가 좋은 이민법을 제정하고 재한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의 근본적 해결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년 4 월

(주) 한국법제연구원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단지 해당 문항의 응답자가 몇 %인지를 알기 위한 통계 분석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강현철 연구위원	
수행기관	THE WORLD BRIDGE	책임연구원	이경태 대표이사 (☎ 02-6279-7080) E-mail : visionkt@naver.com Fax : 02-6279-7081

1. 국내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고 한국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게 되었습니다.

1-1.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① 매우 부정적이다.(문제점이 매우 많다.) ②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현행대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이유?
( )

2-1. 현재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정책은 출입국법,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법령들을 통합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하여 단일법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동의 ② 부동의 ③ 보통 ④ 동의 ⑤ 매우 동의

2-2. (문항 2-1의 ④, ⑤ 응답자만) 이민법 제정의 시기는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가?
① 전혀 시급하지 않다.(필요성은 있으나, 전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② 시급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시급하다.
⑤ 매우 시급하다.(당장 필요하다.)

3-1.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관할할 기구의 성격은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특정부처 총괄 ② 특정부처 산하의 청 ③ 국무총리 산하 독립된 처
④ 업무부처별 담당 ⑤ 기 타 ( ) ⑥ 잘 모름

3-2.(문항 3-1의 ① 응답자만) 만약 특정부처가 총괄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총리실 ② 법무부 ③ 여성가족부 ④ 외교부 ⑤ 노동부
⑥ 기타 ( ) ⑦ 잘 모르겠다.

3-3. (문항 3-1의 ② 응답자만) 만약, 이민청 설치를 한다면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법무부 ② 외교부 ③ 노동부 ④ 기타 ( ) ⑤ 잘 모르겠다.

4-1.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부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잘 모름

4-2. (문항 4-1의 ① 응답자만) 영주권제도를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적법에 규정해야 한다 ② 영주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③ 기타 ( ) ④ 잘 모름

5. 재외동포 750만 시대입니다. 이 중 국내거주 재외동포(외국적 포함)도 70여만 명에 달합니다.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동의 ② 부동의 ③ 보통 ④ 동의 ⑤ 매우 동의

6. 기타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나이)의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SQ3. 귀하께서는 국회 관계자 중 다음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국회의원 ② 의원보좌진 ③ 국회사무처 공무원
④ 지원기관 - 입법조사처 근무자 ⑤ 지원기관 - 예산정책처 근무자
⑥ 정당

이 름		연 락 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

부 록 2 영주권에 관한 법률(안)[48]

제 1 조(목적) 이 법은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과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장기체류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자격으로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상호주의)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국가의 책임과 의무) 국가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영주권의 부여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영주권취득신청을 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영주권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8) 이 법률안은 2001년에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내용으로 재구성하였음.

제 6 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장기체류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영주권 취득의 요건) ① 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것
2. 자신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속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아닐 것

②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제1항에 따른 영주권신청을 할 때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부 또는 모에게 법무부장관이 영주권을 부여한 때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 8 조(영주권의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외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주권신청서의 기재사항, 심사기준 그 밖의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영주권등록증 및 등록원부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영주권등록증을 체류지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을 경유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은 영주권자에게 개인별·세대별 영주권등록원부 및 세대별 영주권등록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주권등록원부에는 영주권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주소·영주권자의 여권번호·여권발급일자 및 여권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주권등록증의 발급절차·발급수수료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주권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영주권등록증의 재발급) 영주권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등록증을 멸실·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영주권의 소멸과 등록증의 반납) ① 영주권은 영주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1.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이 영구 출국한 경우
2. 영주권자의 사망
3. 영주권자의 영주권포기

②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영주권이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강제퇴거의 배제 등)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민등록증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권등록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영주권자의 체류지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5조(출입국) 영주권자는 출입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16조(부동산 거래 등) 영주권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거래 등) ① 영주권자는 예금, 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영주권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어음법」과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의료보험, 국민연금) ① 영주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영주권자는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교육) 영주권자는 국내의 각급 학교에 취학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제20조(납세의 의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